

무배당 모아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하나 HSBC 생명보험주식회사

확 인 서

무배당 모아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을 개정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12년 6월 7일

하 나 HSBC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

선 임 계 리 사 서 종 무

사 업 방 법 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모아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및 세목

가. 무배당 ① 모아 ②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 보장형 계약

나. 무배당 ① 모아 ②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 적립투자형 계약

※ 동 상품은 상품명칭 중 ① 또는 ② 안에는 특정단체, 특정직업군 및 계약자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① 또는 ②에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적립투자형 계약은 보장형 계약의 변경시에만 적용함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가입나이

가. 보장형 계약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나이
종신	일시납	일시납	만 15세~70세
	5년납	월 납	만 15세~60세
	10년납		만 15세~60세
	15년납		만 15세~60세
	20년납		만 15세~60세
	55세납		만 15세~50세
	60세납		만 15세~55세
	65세납		만 15세~60세
	70세납		만 15세~60세
	80세납		만 15세~60세

나. 적립투자형 계약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주기	전환나이
종신	종신	월 납	22 ~ 70세

3.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 3,000 만원 이상

나. 적립투자형 계약 : 기본보험료의 20 배

4. 납입보험료 한도

가. 보장형 계약

(1)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예정산출기초율을 적용하여 성별, 나이, 납입기간 등에 따라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2) 추가납입보험료

- 일시납: 계약일 이후 1 개월이 지난 후부터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 월 납: 계약일 이후 1 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한도의 9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3) 보험료 납입한도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총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이며, 연간납입한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계약자적립금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납입한도로 한다.

- 일시납 : 일시납 기본보험료 * 10% (다만, 초년도는 일시납 기본보험료 * 110%)
- 월 납 : 월납 기본보험료*12*200%

나. 적립투자형 계약

(1)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계약 전환시에 매월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전환 나이	월납 기본보험료
22 ~ 54 세	10 만원 이상
55 ~ 59 세	30 만원 이상
60 ~ 70 세	50 만원 이상

다만, 적립투자형 계약의 기본보험료는 전환 전 보장형 계약이 월납인 경우 전환 전 주보험 기본보험료 이상으로 한다.

(2)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로서 해당월까지 계약자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모두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가 해당월까지 계약자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보험료를 말한다.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경과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며, 추가납입은 1 회당 10 만원 이상 만원단위 금액으로 한다.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한도의 90% 이내로 제한 할 수 있다.
- 1 회 납입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총액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3) 보험료 납입한도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과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

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납입한도로 한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 없음

6. 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 (1) 「기본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금의 105%」 중 가장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2) 「(1)」에서 「기본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기본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인출 후 기본보험금} = \text{인출 시 기본보험금} \times \frac{(\text{인출 시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text{인출 시 계약자적립금}}$$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시, 월계약해당일 직전까지의 납입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 포함)이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납입액만큼 더한다.

- (3) 「(1)」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납입한 「4. 납입보험료 한도」에서 정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하며, 적립투자형 계약의 경우에는 적립투자형 계약으로 변경한 후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 변경시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더한 금액)를 말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 「8.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 (4) 「(1)」에서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금의 105%」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추가납입 또는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가감한다.

나. 적립투자형 계약

「보험가입금액」과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의 합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7. 최저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 (1)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을 말한다.
- (2) 「(1)」에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라 함은 월납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후, 일시납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 이 계약의 약관 제 13 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정적립금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납입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 포함)이 다음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은 발생하지 아니

한다.

-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 :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
-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 보험료 납입기간까지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

나. 적립투자형 계약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특약보험료를 제외한다.

8.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에 관한 사항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이라 함은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9.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다만, 적립투자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적립투자형 계약으로 변경한 후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 변경시 전환된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더한 금액)를 말하며, 특약보험료는 제외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보장형 계약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또는 적립투자형 계약의 경우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을 중도 인출한 경우, 보장형 계약의 기본보험금 및 최저사망보험금과 적립투자형 계약의 최저사망보험금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또는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인출 이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left(1 - \frac{\text{당시 인출금액}}{\text{Max}\{\text{인출시 계약자적립금,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right)$$

- 감액 이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전 계약자적립금}}$$

다. ‘나’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의 인출직전(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해당 인출(감액) 발생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나’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라. 계약자가 해당월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특별계정에 적립된 계약자적립금(이하 “특별계정 내 계약자적립금”이라 합니다)에서 월대체공제액으로 공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수금

비 제외)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한다.

10. 월대체공제액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1) 일시납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납입후 유지비(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납입후 유지비, 이하 “납입후 유지비”라 한다) 의 합계액을 말하며,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2) 월납

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를 말하며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한다.

②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 지난 후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을 말하며,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수금비는 보험료 납입시에 공제한다. 다만, 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누계액 이상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잔액이 없고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한다.

나. 적립투자형 계약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을 월대체공제액으로 하여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다. 회사는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이 공제됨을 청약서에 기재하여 계약자의 동의를 얻는다.

11.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월납에 한함)

가. 보장형 계약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

계약자는 제 2 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 지난 후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4. 납입보험료 한도」에서 정하는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

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해당월의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나. 적립투자형 계약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4. 납입보험료 한도」에서 정하는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해당월의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12.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1) 일시납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등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14 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으로 한다.

(2) 월납

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으로 한다.

②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 지난 후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14 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누계액 이상을 납입하고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잔액이 없으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공제액 충당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납입최고(독촉)를 하지 아니한다.

나. 적립투자형 계약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14 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으로 한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보장형 계약의 경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지 않

있음에도 약관 제 3 조(용어의 정의) 제 18 호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발생요건을 충족하고 예정적립금이 '0'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

- 월납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 회 납입) 이후
- 일시납 : 계약일 이후 1 개월이 지난 후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에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한다. 이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은 없다.

13.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 회 납입) 이내에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다음의 금액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만 납입하여야 한다.

- ① 의무납입기간 이내에 실효된 경우 : 의무납입기간 까지는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이상의 금액, 의무납입기간 종료 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는 연체된 월대체공제액 및 수금비 이상의 금액
- ② 의무납입기간 경과 이후 실효된 경우 :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공제액 및 수금비 이상의 금액

나. 변액보험은 '가'의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다. '가'의 경우 회사는 미납된 월대체공제액을 공제한다.

라. 해지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시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예정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한 계약자적립금과 연체된 기본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연체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대해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 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마. '라'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연체보험료가 완납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제 2 영업일」로 하며, 연체보험료 완납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승낙일+제 2 영업일」로 한다.

바.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 회 납입)이 지난 후에 월납 계약이 해지된 경우 또는 계약자적립금 인출 등의 사유로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하지 아니한다.

사. ‘가’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이 계약의 약관 제 32 조(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약관 제 33 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된다.

14.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9 조(등록) 제 1 항 제 9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 2 조(정의) 제 1 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한다.
- (3) 특별계정운용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계정운용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최고한도 이내에서 회사가 결정하며, 특별계정운용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특별계정운용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적용한다.
- (4)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4] ‘보증준비금 산출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하여 적립한다.
- (5)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은 사망시점의 사망보험금이 최저사망보험금보다 적은 경우 사망보험금의 부족분으로 사용한다.
- (6) ‘(4)’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은 계약소멸, 해지(부활가능기간이 지난 계약) 등 감소계약에 대한 보증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펀드의 유형 및 수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보장형 계약

- ① 채권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5%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 ② 인덱스성장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형 수익증권,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우량 금융기관 등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며, 주식(거래소 및 코스닥주식 포함, 관리종목은 제외), 주식형 수익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50%이내에서 투자하며,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주가지수 200(KOSPI200) 등을 목표지수로 하여 인덱스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한다.

- ③ 안정성장형 : 주식(거래소 및 코스닥주식 포함, 관리종목은 제외)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50%이내를 투자하고,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대출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우량 금융기관 등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2) 적립투자형 계약

- ① 단기채권형 : MMF 형 펀드, 단기채권(편입일 현재 만기까지의 기간이 1 년 이내인 채권 위주)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콜론(Call Loan),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및 기타 제예금 등의 단기 유동성 금융자산에 순자산(NAV)의 90% 이상 투자하여 안정성과 유동성을 추구한다.
- ② 채권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형 펀드,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의 90% 이상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추구한다.
- ③ 주식성장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형 펀드,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형 펀드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의 90%이내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한다.
- ④ 글로벌혼합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형 펀드,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이내로 투자하고, 글로벌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 등에 순자산(NAV)의 90%이내로 투자하여 전 세계 주식 및 채권시장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가지도록 운용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한다.
- ⑤ 아태브릭스주식성장형 : 국내·외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형 수익증권(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에 순자산(NAV)의 60%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외 우량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형 수익증권, 대출 및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한다. 다만, 주식 등에의 투자는 아시아 등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 위주로 운용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동 펀드는 2006 년 4 월 24 일 설정된 「실크로드혼합형」의 명칭을 변경한 펀드임.
- ⑥ 인덱스성장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형 수익증권,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이내로 투자하고, 주식(거래소 및 코스닥주식 포함, 관리종목은 제외), 주식형 수익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90%이내에서 투자하며,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주가지수 200(KOSPI200) 등을 목표지수로 하여 인덱스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한다.
- ⑦ 차이나주식성장형 : 차이나 주식 및 주식형펀드,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형 수익증권(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에 순자산(NAV)의 90%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외 우량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형 수익증권, 대출 및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한다. 차이나 주식형 펀드는 자산 총액의 60%이상을 중국회사 또는 주요 수익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에 투자하여 투자된 자산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주식형 펀드임.

- (3) ‘(1)’ 및 ‘(2)’에서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 및 ‘(2)’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 또는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 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1)’ 및 ‘(2)’의 투자 대상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 (5) 새로운 펀드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 회사가 정한 범위내에서 기존의 계약자에게도 동일하게 펀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한다.

다. 펀드 자동재배분

- (1) 계약자는 계약시 펀드 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단위(6개월, 12개월 단위 중 택일)로 계약체결시 선택한 펀드의 투입비율로 자동 재배분 된다.
- (2) 보험기간 중 펀드의 투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의 투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 되며, 이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단위(6개월, 12개월 단위 중 택일)로 자동 재배분 된다.
- (3)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4) 펀드 자동재배분은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단위(6개월, 12개월 단위 중 택일)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된다.

라.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1)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나’에서 규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다만, 계약자는 펀드 선택시 채권형 펀드를 40%이상 선택해야 한다). 선택한 펀드가 2 개 이상인 경우 펀드 각각에 대하여 펀드별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매년 12 회 이내의 범위에서 펀드별 투입비율의 변경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 (2) 추가납입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지정한 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로 투입되며,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에 투입된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 설정 시 채권형 펀드의 비율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 (3)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이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라 한다)는 ‘(1)’ 또는 ‘(2)’에서 설정한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된다.
- (4) 계약자의 펀드변경
 -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매년 12 회 이내의 범위에서 펀드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펀드로 이전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펀드적립금의 이전은 10 만원 이상으로 하며, 펀드적립금 이전 후 채권형 펀드의 계약자적립금 비율은 전체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 ② 회사는 ‘①’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 5 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 ③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②’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 5 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 ④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계약자의 펀드 변경 요구는 「펀드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5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 (2) 시가법은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 (3)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을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바.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 원을 1 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 좌당 1,000 원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사. 초기투자자금

-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 (2) ‘(1)’에서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 억원 중 적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 ② ‘(1)’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100 분의 20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 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 ③ ‘①’ 및 ‘②’에 의한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아.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88 조(신탁계약의 체결 등)에 의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 265 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자.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한다.
 - ① 투자전문인력의 변경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 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 2 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③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④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2)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 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8 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차. 특별계정의 폐지

-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①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②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③ '①' 내지 '②'에 준하는 경우
- (2) 회사는 '(1)'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 (3) 회사는 '(1)' 및 '(2)'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의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5.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가.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의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월대체공제액 및 계약자적립금 인출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나. 회사는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를 차감한다.

16.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다만,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22. 기타」의 '나' 에 따라 이체한다.)
- (2)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의 상환이 있는 경우
-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1)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2)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 (3)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4)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5)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
(다만, 월대체공제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6)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2) ‘(1)’의 규정에 의한 이체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17.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일시납의 경우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월납의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후부터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년 12회 한도로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하며, 「인출 신청일 + 제 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한다.
-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장형계약 및 계약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적립투자형 계약의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 합계는 납입한 보험료 총액(다만, 특약보험료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장형 계약의 경우 인출 후 특별계정 내 계약자적립금이 보험가입금액의 2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적립투자형 계약의 경우 인출 후 특별계정 내 계약자적립금은 100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또는 인출 당시 2개월분 월대체공제액 중 큰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
- 라. 인출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금액은 「9.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관한 사항」의 ‘나’에 따라 계산한다.
- 마.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 가능하다.

18.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대출신청 당시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나.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신청일+제 2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1.5%」로 부리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15. 계약자적립금의 계산」의 계약자적립금에 포함되며, 대출시 펀드별 분배 비율은 대출일 기준 펀드별 적립금 비율로 한다)
- 다. 계약자는 ‘가’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보험 계약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은 상환일로부터 「상환일+제 2 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부리적립 한 후, 「상환일+제 2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상환일 기준 펀드별 분배금액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투입하고 보험계약대출적립금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수한다.
- 라. 회사는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

19.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감액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비율만큼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20. 적립투자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감액에 관한 사항 (월납에 한함)

- 가. 계약자는 전환일로부터 1 개월이 지난 후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보험료 감액과 동일한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다.
- 나. 기본보험료 감액이 있을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지처리하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21. 적립투자형 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가.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유효한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가 계약일부 7년이 지난 이후에 적립투자형 계약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다음 방법에 따라 변경한다.
- 나. 계약자는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변경 시에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투자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펀드 및 펀드별 편입비율을 선택하여야 하고, 적립투자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다.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적립투자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으로 한다.

- 라. ‘다’의 경우 계약변경 신청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고, 보장형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이체금액으로 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계약자가 계약 변경 시에 선택한 적립투자형 계약의 펀드 및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이 경우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는 「16.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를 적용하고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는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 마. 기타 적립투자형 계약의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 바. 보장형 계약으로의 환원은 취급하지 아니한다.

22. 기타

가.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나.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2) ‘(1)’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제 1 회 보험료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제 1 회 보험료 납입일부턴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다. 다만, 선택한 펀드가 2 개 이상인 경우 해당펀드의 투자수익률에 대하여 펀드투입비율로 가중 평균한 투자수익률을 적용한다.

② 제 2 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 회 납입) 이내

- 납입기일의 전전일(前前日)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기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일부턴 납입기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납입기일 전일(前日)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제 2 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부가보험료를 차감하고 「납입일+제 2 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 납입기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납입일부턴 「납입일+제 2 영업일」까지 「예정이

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 지난 후
 - 「납입일 + 제 2 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해당 보험료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 2 영업일」까지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일 + 제 2 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해당 보험료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 2 영업일」까지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다. 이 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은 일반계정에서 운용한다.

라. 계약자적립금 등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 동안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보험금액 변동에 관한 사항
- (2) 계약자적립금 변동에 관한 사항
- (3)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지시 해지환급금 등

마. 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감독원에 보고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특별계정 총좌수
- (2) 특별계정 기준가격
- (3) 특별계정 자산총액
- (4) 특별계정 자산운용 연평균 수익률
- (5) 특별계정 자산구성내역 및 비율
- (6) 특별계정 자산구성비율 변동내역
- (7) 특별계정운용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 (8)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바.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사. 한 건의 계약으로 여러 계좌를 가입할 경우에는 한 계약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및 보험계약 청약서로 운영할 수 있다.

아.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전환에 관한 사항

- (1)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된다.
- (2)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의 이 계약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자.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 4-14 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 기준)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제외한 범용으로 한다.

차. 재간접투자기구 관련 공시에 관한 사항

회사는 「14.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나’ 에서 정한 펀드 중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그 사실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특별계정수탁보수 및 특별계정운용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 수수료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한다.

카. 선납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선납은 취급하지 아니한다.

타. 보험료의 할인에 관한 사항 (보장형 계약에 한함)

(1) 고액계약에 대한 영업보험료 할인

월납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1 억원 이상인 고액계약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할인한다.

주계약 가입금액	보험료 할인율
1 억원 미만 (다만, 9,700 만원 초과 1 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
1 억원 이상 1.5 억원 미만 (다만, 14,900 만원 초과 1.5 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5%
1.5 억원 이상 2 억원 미만 (다만, 19,700 만원 초과 2 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3.0%
2 억원 이상 3 억원 미만 (다만, 29,600 만원 초과 3 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4.0%
3 억원 이상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5.0%

(2) 월납의 경우, 회사는 보험료가 금융기관 자동이체를 통하여 납부되는 경우에 영업보험료 (특약 포함, 다만, 표준하체인수특약이 부과된 경우 할증보험료에 대해서는 제외)의 1.0%를 할인하여 영수한다. 다만, 초회보험료는 할인에서 제외한다.

(3)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의 변경, 일부 해지 등의 이유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주계약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고액계약 할인율을 적용한다.

(4) 다만, 적립투자형 계약으로 전환 시 전환 이후에는 상기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파.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 및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자산운용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다.